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신산업 육성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보조금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혁신조달기획과의 명칭을 공공조달정책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기획재정부의 정원 1명(7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기획재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예산실 하부조직의 건재 순서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 2. 10. ~ 2.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중 “산업중소벤처예산과·국토교통예산과”를 “국토교통예산과·산업중소벤처예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 및 제20항을 각각 제20항 및 제19항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혁신조달기획과)”를 “(공공조달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혁신조달기획과”를 “공공조달정책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한시정원)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1,083”을 “1,085”로 하고, 일반직 계 “1,072”를 “1,074”로 하며, 행정사무관 “393”을 “39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084”를 “1,085”로 하고, 일반직 계 “1,073”을 “1,074”로 하며, 행정사무관 “407”을 “409”로 하고, 행정주사보 “41”을 “40”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혁신조달기획과(존속기한: 2024년 2월 29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65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2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9일”로, “2023년 3월 1일”을 “2024년 3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기획재정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7조 관련)

1. 제27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예산실) ① ~ ⑦ (생략)	제10조(예산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예산실에 예산총괄과·예산정책과·예산기준과·기금운용계획과·예산관리과·고용예산과·교육예산과·문화예산과·기후환경예산과·총사업비관리과· <u>산업중소벤처예산과</u> ·국토교통예산과·농림해양예산과·연구개발예산과·정보통신예산과·복지예산과·연금보건의료예산과·지역예산과·안전예산과·법사예산과·행정예산과·국방예산과 및 방위사업예산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⑧ ----- ----- ----- ----- ----- ---국토교통예산과·산업중소벤처예산과----- ----- ----- ----- ----- ----- ----- ----- ----- ----- --.
⑨ ~ ⑱ (생략)	⑨ ~ ⑱ (현행과 같음)
<19> (생략)	⑳ (현행 제19항과 같음)
<20> (생략)	㉑ (현행 제20항과 같음)
㉒ ~ ㉓ (생략)	㉒ ~ ㉓ (현행과 같음)
제26조(<u>혁신조달기획과</u>) ① 혁신조달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6조(<u>공공조달정책과</u>) ① 공공조달정책과장----- -----

다.

② 혁신조달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27조(한시정원) ①·② 삭제

③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둔다.

④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65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② 공공조달정책과-----

-----.

제27조(한시정원) 재정사업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둔다.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65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일부개정령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u><삭 제></u>
기획재정부령 제82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2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 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의2 제3호의 정원 1명(4급 1명)은 <u>2023년 2월 28일까지</u> 존속하며, <u>2023년 3월 1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원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 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 ----- ----- ----- -- <u>2024년 2월 29일</u>----- -- <u>2024년 3월 1일</u>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u>1,083</u>		<u>1,085</u>	+2	
·			·		·		
·			·		·		
일반직	계		<u>1,072</u>		<u>1,074</u>	+2	
·			·		·		
·			·		·		
행정사무관			<u>393</u>		<u>395</u>	+2	
·			·		·		
·			·		·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084</u>	• <u>1,085</u>	+1
일반직 계	• • <u>1,073</u>	• • <u>1,074</u>	+1
행정사무관	• • <u>407</u>	• • <u>409</u>	+2
행정주사보	• • <u>41</u>	• • <u>40</u>	-1
•	•	•	
•	•	•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기획재정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6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3.	혁신조달기	획과(존속기한: 2024년 2월 29일)	<u>3. 혁신조</u> <u>달기획과</u> <u>(존속기</u> <u>한: 2023</u> <u>년 2월 28</u> <u>일)</u>	<u>3. 혁신조</u> <u>달기획과</u> <u>(존속기</u> <u>한: 2024</u> <u>년 2월 29</u> <u>일)</u>	
	.		.	.	
	.		.	.	